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8.

발 의 자 : 김주영 · 박 정 · 조계원
정태호 · 강득구 · 한정애
양문석 · 강준현 · 이기현
김태선 · 박해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(이하 “노선버스 운수종사자”)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,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.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

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2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0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) ①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노선버스 운송사업”이라 한다)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노선버스 운수종사자”라 한다)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출연금(개인·단체·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)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한 환급액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 2.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 4. 그 밖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- ⑤ 기금의 관리·운용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2조의2(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) ①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노선버스 운송사업”이라 한다)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노선버스 운수종사자”라 한다)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</u> <u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</u> <u>1. 출연금(개인·단체·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)</u> <u>2. 기금운용 수익금</u> <u>3.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</u>

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하여
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중 「조
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한 환
급액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
로 사용한다.

1.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
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
원

2.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자녀에
대한 장학사업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
경비

4. 그 밖에 노선버스 운수종사
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
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
관이 정하는 사업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
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
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
다.

⑤ 기금의 관리·운용·감독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